

관세법 시행규칙 개선 건의

〈1991. 11. 21 상공부건의〉

1. 건의 배경

본회에서는 임금상승, 원화절상, 통상압력 등의 경제 악제속에 날로 심화되는 제조업계의 생산성 저하 및 경쟁력 약화의 타개 일환으로 전자업계의 자동화 확산을 위해 공장자동화 정보화 추진 협의회를 발족시켜 자동화 촉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따라서 동협의회에서는 최근 전자업계의 자동화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세미나, 정보·정책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자업계 자

동화 추진분위기 조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 13항(관세감면물품)상에 관세감면 수혜를 받는 대상이 수요자 및 설비·기기로 되어 있어 시공업체 및 부분품에 대해서는 전혀 감면을 받지 못하여 자동화기기의 국내 생산업체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제20조 13항의 내용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2. 개선 건의(안)

현행	개선건의(안)	사유
(제20조 13항)법 제28조의6 제1항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 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한다.	(제20조 13항)법 제28조의6 제1항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 또는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 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한다.	○대부분의 국내 자동화 공급업체가 시공자로 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시공자가 기기 및 단품 등을 수입할 때 관세감면이 되지 않음에 따라 자동화를 추진하는 실수요자 측면에서 국내 자동화 업계로부터의 시스템 구성 의뢰를 기피하고 있어 아직도 많은 자동화 기기를 직수입에 의존해오고 있는 실정에 있어, 전년도보다 '90년에는 13%, '91년 6월까지의 21%로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 역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장 자동화, 정보화기기 공급업체가 관세감면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함에 따라 로보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품이 20% 이상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국산제품 판매가 점점 어려워지고, ○가격경쟁, 품질, 신뢰성 등으로 인한 국내 수요자들의 선호사상이 극대화 됨에 따라 국내 공장 자동화 시설의 선진국 예측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1. 정보처리 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및 설비.	1. 정보처리 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및 설비(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화 업계에서는 국산화 개발 의욕이 점차로 상실되어 가고 있고, 기존의 제조업체가 수입상으로 전환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임.
가. 자동설계, 생산 또는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가. 자동설계, 생산 또는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따라서 국내 자동화 기기 공급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시공업체가 국산화하여 공급하고자 수입하는 부분품 및 단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감면해 줌으로서 국내 실수요자가 국내 자동화 공급업체를 기피하는 현상을 최소화 해줌이 바람직함
나.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기 또는 시스템	나.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기 또는 시스템	
2. 기계, 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및 설비.	2. 기계, 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및 설비(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가. 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 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가. 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 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의 기기	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의 기기	